

# 韓國圖書館協會定款

(改正禮紀 4289年 4月 20日)

## 第一章 總 則

第 1 條 本會는 社團法人 韓國圖書館 協會라 稱한다.

第 2 條 本會의 事務所는 서울特別市內에 둔다

第 3 條 本會는 全國의 公共圖書館, 大學圖書館, 學校圖書館, 特殊圖書館, 其他 讀書施設의 提携下에 圖書館事業의 發展을 圖謀함으로써 韓國의 文化向上에 貢獻함을 目的으로 한다.

## 第二章 事 業

第 4 條 本協會는 前條의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다음의 事業을 한다.

1. 圖書館의 管理, 運營, 技術에 關한 調査, 研究 및 實施促進
2. 機關誌 및 圖書館과 讀書에 關한 資料의 編刊
3. 圖書館職員의 教育 및 待遇改善
4. 圖書館의 普及 및 設立經營의 指導
5. 良書의 推薦 選定 및 其普及
6. 讀書運動의 推進 및 指導
7. 圖書館用品의 規格化 및 其普及
8. 圖書館關係資料室의 設置
9. 各國의 圖書館團體 및 關係機關과의 連絡 提携
10. 其他 本會目的 達成에 必要한 事業

## 第三章 會 員

第 5 條 本會의 會員은 다음의 4種으로 한다.

1. 普通會員... 圖書館其他 讀書施設의 職員으로서 本會의 趣旨에 贊同하는 者
2. 特別會員... 圖書館, 學校, 其他 讀書

施設을 가진 團體

3. 贊助會員... 本會의 事業을 贊助하는 個人 또는 團體

4. 名譽會員... 本會에 貢獻이 있는 人士로서 理事會가 推薦하는 者

第 6 條 本會의 會員이 되고 지하는 者는 入會를 申請하여 理事會의 承認을 얻어야 한다

第 7 條 本會의 會員은 所定의 會費를 納入하여야 한다.

但, 會費의 等級과 金額은 理事會에서 定하며 名譽會員에게는 會費를 받지 아니한다.

第 8 條 本會의 會員은 脫退 및 除名에 依하여 그 資格을 喪失한다.

但, 除名處分은 會員으로서의 義務를 履行치 않는 者 또는 本會의 名譽를 損傷한 者에 對하여 理事會의 議決에 依하여 行한다.

## 第四章 任 員

第 9 條 本會에 下의 任員을 둔다

1. 名譽會長 1人
2. 會 長 1人
3. 理 事 若干人(內 專務理事 1人, 常務理事 若干人)
4. 監 事 2人
5. 評 議 員 若干人
6. 顧 問 若干人
7. 參 與 若干人

第 10 條 本會任員의 任務는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은 本會의 事業을 支援協力한다.

2. 會長은 本會를代表하며 會務를統裁한다.

3. 專務理事는 會長을補佐하여會務를總理하며 會長有故時에는 二任務를代行한다.

4. 常務理事는 理事會의 委任을받아 常務를處理한다.

5. 理事는 理事會를構成하여 第20條의 事項을 審議執行한다.

6. 監事는 本會의 會計를每年2回以上 監査하여 總會에報告한다. 監事는 理事會에出席하여 發言할수 있되 表決權은 없다.

7. 評議員은 評議員會를構成하여 第18條의 事項을 議決한다.

8. 顧問은 本會의 諮問에應한다.

9. 參與는 本會의 重要한 會務에 參與하여 專門分野에 關한 諮問에應한다.

參與는 理事會에出席하여 發言할수 있되 表決權은 없다.

第11條 本會任員의 選舉方法은 다음과 같다.

1. 名譽會長은 文敎部長官으로한다.

2. 理事, 監事는 評議員會가 評議員및 普通會員中에서 選舉하여 總會의 承諾을 얻어야한다.

3. 前項外에 第27條의 各部會의 代表者는 理事로한다.

4. 會長, 專務理事, 常務理事는 理事中에서 互選한다.

5. 評議員은 特別會員의 代表者로한다.

6. 顧問은 教育및 文化事業에 功勞가 顯著한者 또는 學識經驗이 豊富한者中에서 理事會가 推薦하여會長이 推戴한다.

7. 參與는 圖書館技術專門家中에서 理事會가 推薦하여會長이 委囑한다.

第12條 本會任員의 任期는 2年으로하되 重任할수 있다.

但, 任員中缺員이 생길 때에는 理事會에서 補選하되 補任者의 任期는 前任者의 殘餘期間으로한다.

第13條 本會의 任員은 任期滿了時라도 後任者가 決定될때까지 二任務를執行한다.

## 第五章 會 議

第14條 本會의 會議는 總會, 評議員會, 理事會의 3種으로하며 會長이 이를召集하고 그議長이 된다.

但, 理事會의 議長은 輪番制로할수 있다.

第15條 本會의 總會는 特別會員의 代表者, 普通會員및 個人의 贊助會員으로構成하고 會員分5之1以上의 出席으로成立하며 다음과같이 開催한다.

1. 定期總會는 每年 1回年變初에 開催한다.

2. 臨時總會는 다음의 境遇에 開催한다.

(1) 理事會또는 評議員會에서 議決할때

(2) 監事가 連署로 要求할때

(3) 會員10分1之以上이 議題를 明示하여 要求할때

第16條 總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定款에서 定해진 事項

2. 事業報告의 審議

3. 豫算, 決算의 承認

4. 定款의 變更

5. 其他 重要한 事項의 議決

第17條 本會의 評議員會는 다음과같이 開催하며 評議員3分1之以上의 出席으로成立한다.

1. 定期評議員會는 每年年變初에 開催한다.

2. 臨時評議員會는 다음의 境遇에 開催한다.

(1) 理事會에서 議決할때

(2) 評議員 5分1之以上이 議題를 明示하여 要求할때

第18條 評議員會의 機能은 다음과 같다

1. 本定款에서定해진事項
2. 任員의選舉
3. 其他必要한事項의議決

第19條 本會의理事會는 다음과같이開催하며 理事過半數出席으로成立한다.

1. 會長이必要를認定할때
  2. 理事3人以上이要求할때
- 但, 緊急을要할때는會長이書面또는口頭로서 理事의意見을얻어 理事會에代할수있다.

第20條 理事會의機能은 다음과같다.

1. 本定款에서定해진事項
2. 總會및評議員會에서 議決한事項의執行
3. 定款의變更案및 其他總會에 附議한案件의 審議
4. 其他重要한會務의審議執行

第21條 本會 諸會議의議事は 出席者過半數로서 決定하며 可否同數일때는 議長이決定한다.

第22條 出席會員이出席치 아니한 他會員의表決權을委任받았을때는 이를認定한다

## 第六章 事務局

第23條 本會는事務局를處理하기爲하여 事務局을設置하고 다음의職員을둘수있다.

1. 事務局長 1人, 幹事若干人, 書記若干人

事務局長은 理事會의 推薦으로 幹事및書記는 事務局長의 推薦으로 各各會長이任命한다.

事務局長은 理事會에出席하여 發言할수있되表決權은없다.

## 第七章 財 政

第24條 本會의經費는 다음의收入金으로充當한다.

1. 會 費
2. 國庫補助金
3. 寄附金또는 贊助金

4. 基本財産收入金
5. 事業收入金
6. 其他收入金

第25條 本會의財政上緊急을要할때는理事會의議決로서豫算의變更을할수있다

但, 次期總會의承認을얻어야한다

第26條 本會에基本財産을둔다

但, 基本財産의管理方法은理事會에서定한다.

第27條 本會의會計年度는 政府會計年度와같다.

## 第八章 部會및委員會

第28條 本會에下記部會를 둘수있다.

1. 公共圖書館部會
2. 大學圖書館部會
3. 學校圖書館部會
4. 特殊圖書館部會
5. 其他必要한部會

第29條 本會는理事會의議決에依하여必要한委員會를둘수있다.

## 第九章 解 散 其 他

第30條 本會를解散코져할때는 總會의議決과文教部長官의許可를얻어야한다

第31條 本會를解散할때의 殘餘財産은總會의議決에依하여本會와類似한目的을 가진公益團體에寄附한다.

第32條 本定款은第30條의手續을經하지아니하면變更할수없다.

第33條 本定款의 施行에 必要한 規程및細則은 別途로 理事會에서定할수있다.

## 附 則

本定款은 檀紀 4289年 4月 20日부터施行한다

##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部會規程

(改正 4282年 6月 9日)

第 1 條 本協會(以下圖協이라稱한다)는定款第28條에依하여 다음의部會를둔다.

(-) 公共圖書館部會

- (二) 大學圖書館部會
- (三) 學校圖書館部會
- (四) 特殊圖書館部會
- (五) 其他必要部會

第 2 條 各部會의事務所는部會長이所屬하는圖書館內에둔다.

第 3 條 各部會는理事會및部會相互間의緊密한連絡下에各自의分野에共通한問題의研究, 調査및 그實施促進을圖謀함을目的으로한다.

第 4 條 各部會는圖協會員으로서 所屬別로構成한다.

第 5 條 各部會 에다음 任員을둔다.

- (一) 部 會 長 1人
- (二) 幹 事 若干人

各部會長은定款第11條 3項에依하여圖協理事로한다.

第 6 條 各部會長은各部會의總會에서推薦하여 圖協會長이委嘱하고 幹事는部會長이委嘱한다.

任員의任期는 2年으로하되重任할수있다

第 7 條 各部會의定期總會는 圖協定期總會의 即前に開催하여重要한事項을議決한다.

第 8 條 各部會의總會는所屬會員5分1之以上の出席으로成立하며議事は出席者過半數로써決定한다.

第 9 條 各部會의經費는다음의 收入金으로充當한다.

- (一) 圖 協 交付金
- (二) 其 他 收入金

第 10 條 各部會는每年 1回以上 그部會의 活動 및會計報告를圖協會長에게提出하여야한다.

第 11 條 各部會의 目的을 達成하기爲하여 地域別로 協議會를 둘수있다. 協議會의 規程은 이를 따로 定한다.

#### 附 則

本規程은 檀紀 4289年 4月 20日부터 施行한다.

###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委員會規程

(改正 4293年 1月 25日)

第 1 條 韓國圖書館協會(以下圖協 이라고稱한다) 定款第條에依하여 다음의委員會로둔다.

- (一) 技術委員會
- (二) 行政委員會

各委員會에必要한分科委員會를둘수있다

第 2 條 各委員會의 事務所는 委員長이 所屬하는 圖書館內에둔다.

第 3 條 各委員會는 理事會, 部會및 委員會相互間의緊密한 連絡下에下와如히 各自의專門分野에關하여 研究調査및 그實施促進을圖謀함을目的으로한다.

#### (一) 技術委員會

- (1) 標準分類法의制定, 普及, 改訂 및 分類法의 研究에關한事項
- (2) 標準編目規則의制定, 普及, 改訂 및 編目規則의 研究에關한事項
- (3) 圖書館學 및 圖書館關係術語의 制定, 普及, 改訂, 研究에關한事項
- (4) 圖書館의 建築, 設備, 用品에對한基準規格의制定普及 및 研究에關한事項
- (5) 綜合目錄編纂에關한事項
- (6) 其他必要한事項

#### (二) 行政委員會

- (1) 圖書館學의 教育에關한事項
- (2) 圖書館關係 諸法規의整備, 研究에 關한事項.
- (3) 涉外業務에關한事項
- (4) 內外圖書館資料의 導入 및 交換貸借에關한事項
- (5) 其他必要한事項

第 4 條 各委員會는 圖協會員으로서 構成한다.

(一) 委員長 1人

(二) 分科委員長 1人

(三) 委員 若干人

委員長은理事會의推薦으로會長이委囑한다.

委員은委員長의推薦으로理事會의認準을거쳐會長이委囑한다.

第 5 條 各委員會의委員은實務委員과諮問委員으로나눌수있다.

(一) 實務委員은그所管事項의實務를擔當한다.

(二) 諮問委員은實務委員會의諮問에應한다.

第 6 條 各分科委員會는隨時로開催하며議事는委員過半數出席으로成立하며出席委員3分2之以上으로써決定한다.

第 7 條 各委員會의經費는圖協交附金및其他收入金으로充當한다.

第 8 條 各委員會는年1回以上그委員會의活動및會計報告를圖協會長에게提出하여야한다.

### 附 則

本規程은 檀紀 4289年 4月 20日부터施行한다.

## 한국도서관협회 학교도서관협의회 규약 준칙

제 1 조 본회는 ○○학교도서관 협의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회는 한국도서관협회 부회규정 제11조에 의하여 설치한다.

제 3 조 본회의 사무소는 간사장 제임학교 도서관내에 둔다.

제 4 조 본회는 학교도서관 사업의 진전 및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5 조 본회는 다음의 사업을 한다.

1. 학교도서관의 설치운영 및 받

전에 관한 연구

2. 도서관협회 및 타지구 학교도서관협의회와의 연락 및 협조
3. 그밖에 본회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 6 조 본회의 회원은 학교도서관으로 한다. 각학교도서관 담당자는 그대표가 된다.

제 7 조 본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1. 고문 약간명
2. 간사장 1명
3. 간사 약간명

본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며그임기는 1년으로 한다.

고문은 회원도서관의 교장 및 관하게명사를 추대하며 간사는 본회 회원중에서 선임하고 간사장은 간사회에서 호선한다. 간사장은 유고할때는 간사장이 지명한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 8 조 본회는 다음의 회의를 가지며 간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1. 총회는 년 1회로 하고 필요할 때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2. 간사회는 매달 1회 개최되며 필요할 때는 임시간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 9 조 본회의 경비는 도서관협회 교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 10 조 본회의 회계년도는 도서관협회 회계년도에 준한다.

제 11 조 본 규약은 총회의 의결과 도서관협회 이사회의 승인에 의하여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규약은 단기○○년○월○○일부터시행한다.